

소송업무 처리 규칙

제정 2022. 08. 12. 제1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수행 및 소송사무,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진흥원 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흥원 직원을 말한다.
2.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명된 진흥원 직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송무담당부서장”이란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소송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4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송무담당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원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즉시 소장을 인계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지도하고, 소송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으로 정한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소송문서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송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원장에게 제소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 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소송담당자의 지명
7. 자문변호사 자문 의견
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 자료

제7조(소송담당자)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하며, 기간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직원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할 수 있다.

1. 주관부서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나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송무담당부서장은 선임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류,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서의 출석, 변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에 대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주관부서장 또는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및 선고기일에서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소송대리인의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소송비용 등)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성공 보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는 판결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원장에게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을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상소의 포기) ① 소송사건이 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제17조(종결보고) 소송담당자는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및 회수
4.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소송비용 회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진흥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 필요)

제20조(소송비용심의위원회) ① 제19조제5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소송 비용 회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간사 겸 내부 위원이 된다.

③ 주관부서장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전문가, 공공부문의 감사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내부 위원에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며, 그 밖에 소송 담당 직원 등 실무관계자를 내부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1회성(사안별) 회의체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담당자는 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된 사건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회수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비용액결정 신청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위한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즉시 그 결정문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소송담당자는 상대방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압류할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흥원이 소송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며 재산명시신청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도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소송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소송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금액에 관한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제2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패소이유가 규정, 제도 등의 결함인 경우에는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4. 패소이유가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의뢰 또는 구상권 행사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임의변제) ① 주관부서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

제4장 소송사건 관련 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24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제26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증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26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00. 00. 규칙 제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번호 ,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은 (변호사 ○○○, 주소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 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③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④ 소의 취하 ⑤ 청구의 포기 및 인낙 ⑥ 복대리인의 선임 ⑦ 목적물의 수령 ⑧ 공탁물의 납부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⑨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및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⑩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⑪ 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 (직인)

○○○○법원 귀중

임의변제 청구 위임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피고:)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같은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